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79호 2013년 6월 12일(수)

조 례

-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 5
-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37
- 보건소 청사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8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6월 12일

속초시 조례 제2325호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2. “노인”이란 사단법인 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 사단법인 지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회에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중앙정부나 속초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지회는 보조금 사용 시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와 「속초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6월 12일

속초시 조례 제2326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상황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증을 전자카드화 할 수 있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다만,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 및 육아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18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算定)된 연가일수가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개월} - \text{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론으로 본다.

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

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견근무, 연가, 공가, 휴가를 받은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제16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2)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6월 12일

속초시 조례 제2327호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증명, 확인	1. (계약·납품) 실적 증명	1건	무료	
	2. 공장에 관한 증명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1건	2,000	
	○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지방세 납세 증명	1통	무료	
	○ 지방세 과세(세목별) 증명	1통	800	
	4. 건축물에 관한 증명			
	○ 건축물대장 등·초본	1건	500	
	- 현황 도면 추가	1면	100	
	○ 건축물대장 열람	1건	300	
	5. 부동산에 관한 증명(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	1필지	1,000	
	- 컬러 발급의 경우	1필지	1,500	
	○ 개별공시지가 확인	1필지	800	
	○ 개별주택가격 확인	1주택	800	
	○ 공동주택가격 확인	1주택	800	
	6. 어업에 관한 증명			
	○ 어업권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 어선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7. 그 밖의 제 증명			
	○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1,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면허 등록 지정 등	1. 일반 행정 분야			
	○ 공유재산 대부 신청			
	- 신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 연장	1건	3,000	
	2. 문화·체육 분야			
	○ 게임제작업 등록	1건	20,000	
	○ 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30,000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1건	5,000	
	○ 공연장 등록	1건	10,000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 영화업 신고	1건	20,000	
	○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2,500	
	○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2,500	
	○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 출판사 신고			
	- 신규	1건	10,000	
	- 변경	1건	5,000	
3. 관광 분야				
	○ 종합유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70,000	
	○ 일반유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	
	○ 종합유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40,000	
	○ 일반유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20,000	
	○ 기타 유시설업 신고	1건	30,000	
	○ 기타 유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 유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4. 부동산 분야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	1건	무료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5. 산업·경제 분야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 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	
6. 농업·건설 분야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7. 환경 분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8. 교통 분야			
	○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1건	6,000	
	9. 보건 의료 분야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5,000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5,000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1건	15,000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1건	15,000	
	○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1건	60,000	
	○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30,000	
	○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60,000	
	○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30,000	
	10. 해양 수산 분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	3,700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7,300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300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2,500	
	○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	
	○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1건	3,900	
	○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 면허 신청	1건	7,300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900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6,000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3,700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1건	3,700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1건	6,700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6,000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6,000	
	○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1건	2,200	
	○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1건	1,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1건	1,000	
	○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1건	2,000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200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2,000	
	○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1,600	
	○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2,300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6,700	
	○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4,500	
	○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4,500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5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3,000	
	○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500	
	○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 가 신청	1건	3,000	
	○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 가 신청	1건	1,500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 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 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 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 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 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	

[별표 2]

무인민발급기에서의 수수료

민원사무	기준	수수료(원)	비고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개별공시지가확인	1필지	4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관할 구역 안)	1필지	500	
토지대장(등본)	1필지	300	
건축물대장 등본	1통	300	
지방세 과세(세목별)증명	1통	400	
어선원부 등본	1통	400	
농지원부	1통	500	
자동차등록부	1통	200	
건설기계등록부(관내)	1통	300	
건설기계등록부(관외)	1통	800	

※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수수료는 정액 수수료의 50%, 십원단위는 올림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6월 12일

속초시 조례 제2328호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에 저축된 부분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를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공원(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다)”을 “공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며, 같은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의 완화) ①~③ (생략) ④ (신설)</p>	<p>제3조(적용이 완화)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u></p>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생략) 1.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의 증축 또는 개축(<u>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에 저축된 부분을 제외한다</u>) 2.~4.(생략)</p>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1.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의 증축 또는 개축 2.~4.(현행과 같음)</p>
<p>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u>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u>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u>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① 영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한다)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생략)</p>	<p>제28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p> <p>① (생략)</p> <p>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하천·바다·철도·공공공지·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유수지·-----</p> <p>③ (생략)</p>	<p>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p> <p>①(현행과 같음)</p> <p>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하천·바다·철도·공공공지·공원·유수지·-----</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생략)</p> <p>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p> <p>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p> <p>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p> <p>②~④(생략)</p>	<p>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현행과 같음) (삭제)</p> <p>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p> <p>②~④(현행과 같음)</p>

[별지 제3호 서식]

속초지역 건축사회 지정 제	-	호
지정일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 임시사용전
 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지정 신청서

1. 건축물 현황

건축물위치			
건축주		설계	
건축물용도		동수	동
구조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건축허가일자		착공일자	년 월 일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율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속초시 건축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 신청인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3. 업무대행 지정자

업무지정 건축사	상호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20 . . .

속 초 지 역 건 축 사 회 장 (인)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6월 12일

속초시 조례 제2329호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를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를 “속초시립풍물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풍물단”을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량이 우수한 자를”을 “6년 이상 단원으로 복무하고 전형위원회 평정 등급이 ‘수’ 인 사람을”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11호·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용어의 기준”을 “용어의 뜻”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제2호·제3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 · 제10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

구 분	직 렬 등 급	초임호봉
악 장	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무 장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u>속초시립풍물단(이하“풍물단”이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u>풍물단</u>의 정원은 악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② 생략 ③ 생략</p> <p>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④ (생략) ⑤ 수석단원은 <u>기량이 우수한 자</u>를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u>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각 용어의 <u>기준 및 지급기준</u>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 “보수 및 제수당”이라 함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1회 등 단원에게 지급 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가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1과 같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u>속초시립풍물단</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u>속초시립풍물단(이하“풍물단”이라 한다)</u>의 정원은 악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④(현행과 같음) ⑤ 수석단원은 <u>6년 이상 단원으로 복무하고 전형위원회 평정등급이 “수” 인 사람</u>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u>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각 용어의 뜻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 “보수 및 제수당”이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1회 등 단원에게 지급 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가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1과 같다.</p>

2. “예능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

구 분	직 렬 등 급	초임호봉
악 장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단 무 장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단 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2. “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 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

구 분	직 렬 등 급	초임호봉
악 장	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무 장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조서 참조
3. 도로길이 : 도로지정조서 참조
4. 도로너비 : 도로지정조서 참조
5. 도로지정 면적 : 도로지정조서 참조
6.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 번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면 적(m ²)		소유자	허가(신고)번호 및 허가(신고)일	비 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계	4필지	69.5	4		278		2013-건축신고-제20호 (2013.05.31.)	
속초시 노학동	산526-9 (임)			77	77	김복순		
	산526-11 (임)			70	15	김복순		
	510-24 (과)			330	8	김성일		
	510-1 (과)			1811	178	김윤애		

보건소 청사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속초시 보건소 내·외 보안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안전은 물론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방법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속 초 시 장

1. 설치목적

속초시 보건소 청사 내·외 보안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안전은 물론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용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내용 : 청사 방법용 CCTV 설치
- 나. 설치대수 : 5대(신관1층현관후문/구관 현관 민원실 접수 및 환자대기실)
- 다. 설치장소 : 속초시 수복로 36(보건소 청사내·외 4개소)
-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내(구관1층 민원실 접수 및 환자대기실 각1대, 신관후문 1대)
청사 외(구관현관신관현관 각1대) 각 24시간 촬영
- 마. 영상저장 : 30일 이내
- 바. 관제장소 : 속초시 보건소 사무실(2층)
- 사. 담당부서 : 속초시 보건소 보건행정팀(☎033-639-2550)

3. 공고기간 : 2013. 6. 12 ~ 2013. 7. 2(21일간)

4. 근거법규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보건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3. 6. 12 ~ 2013. 7. 2(21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우편번호 217-060) 속초시보건소
- 전화 : 033-639-2550
- 팩스 : 033-639-2554

다. 제출처 : 속초시 보건소

라.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서식 1부.

